

| | |
|--------------|----------------|
| 의안번호 | 제 736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 | |
|----------|-----|
| 의안 번호 | 736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건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충청북도 건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건축 도시정책의 여건변화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건축 관련 현황조사, 계획수립 관련 의식조사
- 비전 및 목표설정
 - 비전 : 포용·혁신·통합의 충북 건축문화공간 조성
 - 정책목표(3) : 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창출, 미래지향적 기술중심의 건축 실현, 도시·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
- 부문별 전략과제
 - 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창출 :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공간창출, 포용과 안전의 정주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 기술중심의 건축 실현 : 스마트 기반의 공공건축 혁신, 국가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발굴,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제경쟁력 확보
 - 도시·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 :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행정 구현
- 행정단위별 주요 전략과제 : 도 단위, 시 단위, 군 단위

3. 의안전문 : 붙임(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요지)

※ 본보고서 별첨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I

계획수립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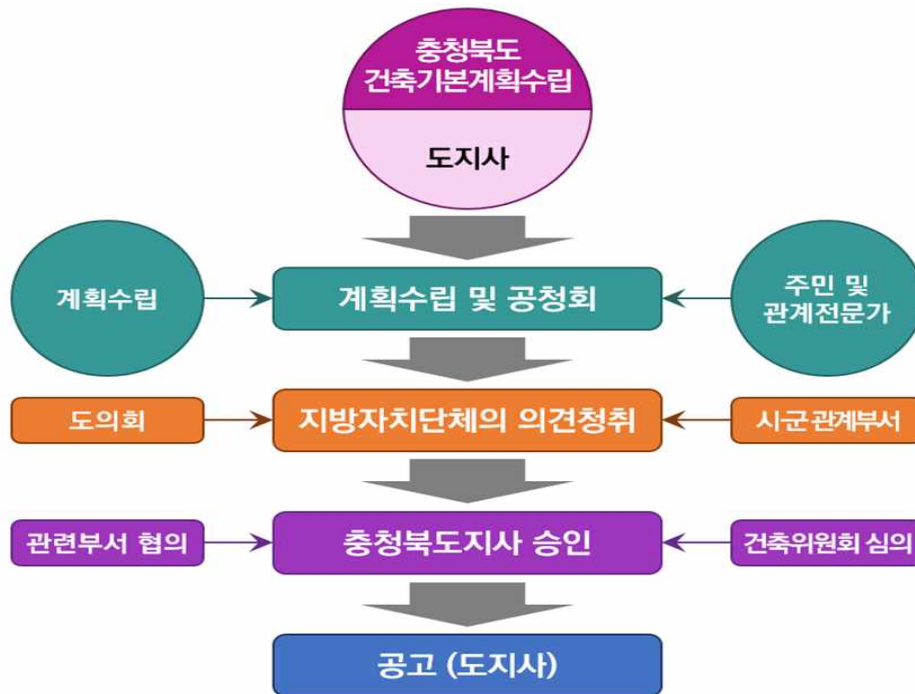
1. 목적

- 건축의 생활 공간적·사회문화적 공공성 확보 등 충청북도의 중장기 건축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실천과제 제시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각 시·군의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제공
- 건축물 및 공간 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제 및 재정지원방안 제시

2.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25년 ※ 5년마다 수립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행정구역 전역
 - 11개 시·군, 면적 7,408km²
- 내용적 범위
 - 건축 관련 일반현황 및 특성 조사
 - 건축여건 변화 및 전망
 - 비전과 전략목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 향후 환경변화(2026~2030) 예상 및 대응방안

3. 계획수립 절차



4. 추진상황

-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 5. 14.
- 용역계약 체결 : 20. 6. 19.
- 착수보고회 개최 : 20. 7. 17.
- 중간보고회 개최(1차) : 21. 2. 17.
- 중간보고회 개최(2차) : 21. 4. 21.
- 공청회 개최 : 21. 5. 10.

5. 향후계획

- 관계부서 협의·최종보고회 개최 : 21. 6. ~ 7.
-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 21. 8.
- 용역 완료 : 21. 9. 17.
- 공고 및 관계기관 송부 : 21. 10.

○ 건축 도시정책의 여건변화 검토

- 사회적 여건 변화 : 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 도시계획 여건 변화 : 주거공간의 변화, 농촌지역(비도시지역)의 활성화,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필요
- 건축 패러다임 변화 : 건축물 노후화, 건축 수요 다양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필요성 증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충청북도 경관계획,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등 검토

○ 건축 관련 현황조사

- 주택현황 : 주택종류별, 건축연도별, 연면적별, 주택보급률, 빈집 등
- 건축물 현황 : 용도별, 면적별, 건립연도별 등
- 노후건축물 및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 건축허가 현황 : 형태별, 구조별 현황
- 건축산업 현황 : 사업체수, 산업단지 현황
- 건축자원 현황 : 문화재, 한옥, 건축자산, 공공시설(관공서, 복지시설), 건축인력(건축사, 대학) 등
-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현황

○ 계획수립 관련 의식조사(도민, 공무원, 전문가 등)

- 분석결과 : 계획 실행체계의 확립, 충북 특성을 반영한 건축디자인, 건축·도시·경관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 안전성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 생활밀착형 커뮤니티의 구축 등에 대한 고려 필요

Ⅲ

비전 및 목표설정

○ 비전 설정의 전제

- ❖ 건축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수용성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 ❖ 기존계획(제1차 충북 건축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 건축 관련 의식조사 결과의 경향성



비전 및 전략 도출

○ 비전 및 추진전략

| | | | |
|-------------|--|--|---|
| 비 전 | 포용·혁신·통합의 충북 건축문화공간 조성 | | |
| 정책목표 | 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창출 | 미래지향적 기술중심의 건축 실현 | 도시·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 |
| 추진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공간창출✓ 포용과 안전의 정주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기반의 공공건축 혁신✓ 국가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발굴✓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제경쟁력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행정 구현 |

IV

부문별 전략과제

1. 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창출

1-1.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 전략 | 주요내용 |
|--------------------------|--|
| 빈집실태조사(DB구축)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군별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 계획에 따른 빈집 철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귀농귀촌주택 지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제시 |
| 노후불량 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노후학교시설 등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적극 추진 • 민간건축물 : 개인이 소유한 노후 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비용 지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활용한 원도심 집수리 사업 활성화(자부담 10%) |
| 마을관리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주택, 1인 주택 등 집수리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마을 내 집수리 추진 • 마을 내 다양한 공용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주차장, 공원 등) |
| 시·군별 주거복지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상담 • 공공임대주택 관련 상담 • 지역 주거현황 파악 및 주택 DB 구축 • 관계자 교육 및 인력 양성 • 유관기관(LH 등)과의 연계 |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1-2. 수요자 중심의 공간창출

| 전략 | 주요내용 |
|---------------------|---|
| 수요 맞춤형 농촌주택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홈 :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 귀농귀촌인의 집 : 예비귀농귀촌인들이 단기간 머무를 수 있는 주거공간 • 한달살기 집 : 외지인이 해당 시·군을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주거공간 • 가족형 임대 주택 : 외지인이 해당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
| 청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주택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청년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 민간 세어하우스 공급 지원 • 산업단지 종사자 대상, 주거 임대료 지원 |
| 귀농귀촌마을 (은퇴자마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조성 시 진입도로 등 인프라 사업 지원 • 은퇴자 대상의 지역내 정착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 및 은퇴자 이주 홍보 |

1. 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 창출

1-3. 포용과 안전의 정주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 구분 | 주요내용 |
|-----|--|
| 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보호시설 확충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개발 다양한 노인주거형태 개발 |
|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내 편의시설의 공급 도로 및 교통수단 등 교통시설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 중증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시설 확보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

✓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전략 | 주요내용 |
|---------------------|---|
| 안전 중심의 커뮤니티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주거지 개선 사업 야간보행환경 개선 사업 범죄 없는 공동주거지 조성(신도심) 사업 무재해 산업단지 구축 사업 |
| 안전한 교류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공공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내진설계 적용 등 공사감리 및 건축물 설계 검토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작성 |
| 범죄예방 공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범죄 없는 안심구역 확대 사업 여성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공공공간 인프라 확충 사업 절도범죄 예방을 위한 영역성 강화 사업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 |

2. 미래지향적 기술중심의 건축 실현

2-1. 스마트 기반의 공공건축 혁신

| 전략 | 주요내용 |
|---|--|
| 지능형 건축물 인증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송컨벤션센터, 오창지식복합센터 등 신규 건립 공공시설을 지능형건축물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추진 청주국제공항, 철도역 등 국가기간시설 부속 건축물의 인증 추진 주요 민간개발 건축물, 주택단지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유도 |
| 디지털 트윈 연계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범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오창 지식복합센터 등 구축 예정 대규모 건축물을 BIM 시범사업으로 추진 오송, 충주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 트윈 구역으로 조성하고, 구역 내 주요 시설을 BIM으로 구축 |
| 노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이 높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제고 노후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정비 |

2-2. 국가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발굴

| 전략 | 주요내용 |
|------------------|--|
| 스마트 홈 시범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복형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가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무선가스제품 개발, 평가 기술개발 및 장비구축 충북혁신도시 입지 건물에너지기술센터, 태양광기술센터에서 BIPV 등 건물에너지 기술개발 오송, 충주 등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 육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아파트·다가구주택 등에 스마트홈 IoT 기기를 맞춤 적용 추진하여 스마트홈 플랫폼과 사회 안전망 서비스와 연계 화재감지·경보, 비상호출, 방범, 고독사 예방 등 스마트홈 인테리어 시범 사업 추진 충청북도 지역전략산업과 스마트홈 산업의 융합생태계 구축 |

2. 미래지향적 기술중심의 건축 실현

2-3.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가경쟁력 확보

✓ 공모 추진을 통한 충북 건축의 위상 강화

- 추진사례 :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 (기본목표) 통합시청사의 상징성, 공공청사의 개방성, 업무공간의 혁신 및 효율화, 시민의 접근성, 기존 본관동 활용방안 등
 - (진행방식) 2단계로 진행(1단계 : 64개국 479개팀 중 5팀 선정 / 2단계 : 1단계선정 5팀 + 전문위원회 지명 국외 3팀 참여)
 - (결과) 스노헤타(노르웨이 건축사사무소) 당선
 - (향후일정) 2025년 완공 목표로 설계진행 예정(사업비 약 2,300억원)
- 계획중인 충북자치연수원, 옥천군청사, 예술문화회관, 체육관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상설계 실시

3. 도시·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

3-1.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 역할 | 업무범위 |
|---------------------------------|--|
| 도 직접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예산 직접사업의 발굴, 기획, 자문 등의 지원 |
| 도 직접사업 자문 및 연계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진행단계별 자문 • 연관 사업 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연계 조정 •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및 지원 |
| 도 법정계획의 검토, 자문,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및 전략, 기본방향 및 세부계획 등에 대한 자문 검토 • 동일한 위계의 법정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조정 |
| 시·군 지원사업의 관리체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지침 검토, 조정 • 운영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방안 등 사업관리체계 검토, 자문, 조정 |
| 도 단위 공공건축가 관리 및 관할 시·군 공공건축가 파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단위 공공건축가 구성(추천) 및 운영 총괄 • 도 추진 사업별 적합한 공공건축가 추천, 관리 • 시·군에서 요청 시 사업에 적합한 공공건축가 추천 및 파견 |
| 교육 등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단위 총괄건축가 제도 및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시·군 총괄건축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 |

3. 도시·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

3-2.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축문화진흥

| 전략 | 주요내용 |
|---------------------------------------|--|
| 기 추진중인 지역 건축문화재 및 건축자산 활용사업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육성 건축문화재의 지속적 모니터링 건축문화재 활용사업 홍보 및 시·군의 프로그램 연계 |
| 충북 내 건축자산 아카이브 및 MAP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업데이트 건축자산의 기록화 및 전산 시스템 마련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 |
| 건축문화재, 건축자산 지도앱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재 및 건축자산의 정보서비스를 GIS기반으로 관리 디지털 정보 수집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방안 모색 충북도서관특독(충북교육청 전자도서관 앱) 데이터 연계 및 콘텐츠 개발 |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등록문화재 및 건축자산의 보존, 활용 방안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의 목록화 작업 및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록문화재와 건축자산을 문화체험의 거점공간 활용 및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사업 구역과 연계하여 문화재 선정 및 활용 지원 |
| 실감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현실·증강현실·홀로그램 도입 중원문화권의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브랜드 육성, 실감미디어 도입 |

3-3.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행정 구현

✓ 지역 건축안전센터 건립

| | |
|----------|---|
| 추진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건축법시행규칙」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공사장 등 안전점검 지원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건축물 점검 및 자문 건축안전 사고 발생(예측) 시 건축물 긴급점검 |
| 업무규정(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분석,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도시·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

3-3.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행정 구현

✓ Post Covid-19 대응전략

| 전략 | 주요내용 |
|-------------------------|--|
|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워크 공간계획 수립 공간의 다기능화 및 유연성 강화 |
| 공간구조 연계 공공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재거점빌딩 건축 유도 생활권 단위 공공보건지소 확충 및 병원 설립 |
| 도시 내 공유공간으로의 공원·녹지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공원의 확충 및 접근성 향상 추진 주거지 연계 생활권 녹지체계 구축 생활 밀착형 심터 조성 |
| 주거시설의 위생 강화 및 안전 공간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시급 실내 환기 등 다양한 위생 방역시설 도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기준 강화 |
| 농촌공간(비도시지역)의 활용 극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 증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마을(Urban Village) 조성 계획 수립 농촌과 중소도시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도시 구축 |

V

행정단위별 주요 전략과제

1. 도 단위

- 광역차원의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운영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건축행정 인력의 확대 및 교육(건축조직의 전문화)
- 지역산업연계 건축서비스 육성정책 발굴(충북건축 산업화)
- 건축자산의 DB구축 및 발굴(지역건축문화 발굴)
- 도시·건축·경관·재생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아름다운 건축물 구현을 위한 공공건축물 발주방식 제도개선

2. 시 단위

- 지역의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민간전문가제도 적극 도입 및 활용
-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국내, 국제현상공모 적극 추진(스마트 건축)
- 공공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건축 관련 법정계획 적기 수립(공공디자인, 경관, 주택, 간판 등)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환경조성
-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조성(주민 아이디어공모전)

3. 군 단위

- 지역 고유의 정체성(역사문화, 산업, 관광, 농업 등)을 대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환경조성
-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조성(주민아이디어 공모전)
- 농촌 빈집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연계)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사업 연계)

[관 계 법 령]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충청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